

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04
----------	-----

발의일시: 2006. 7. 14

발 의 자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심사안건이 수시로 발생하여 특별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해야 하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존속기한을 정함으로써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중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 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
(안 제7조 제4항)

3. 근거법령 : 지방자치법 제54조

4.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
5. 기타 참고자료 : 없음

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 다만,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특별위원회) ①<생략></p> <p>②<생략></p> <p>③<생략></p> <p>④ <u>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</u></p>	<p>제7조(특별위원회) ①<현행과 같음></p> <p>②<현행과 같음></p> <p>③<현행과 같음></p> <p>④ <u>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 다만,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.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지방자치법

제54조 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